

부패예방과 척결에 책임있는 공공기관과 당국의 청렴성과 효과성 증진에 대한 고위급 원칙

소개

강력한 반부패 기관은 공공분야 청렴성을 강화하는 반부패 법률, 정책과 관행을 이행해야 한다. 효과적인 반부패 조치는 대중의 신뢰 강화에 필요하다. 국가의 반부패 제도적 틀은 부패 예방 척결하는 역할을 하는 다양한 기관 또는 당국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 또는 당국의 청렴성을 보장하는 것은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척결하는데 중요하다.

유엔반부패협약(UNCAC)은 국가의 법률제도와 기본 원칙에 따라 반부패 정책과 관행을 이행하고 부패 예방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고 증진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포함하여 부패를 예방하는 적절한 기관의 존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UNCAC는 또한, 부패척결 기관, 기관들 또는 개인이 법집행을 통해, 국가의 법률제도와 기본원칙에 따라, 부당한 영향없이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존재와 필요한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021 UN특별총회(UNGASS) 정치선언을 통해 당사국들은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모든 수준에서 강력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부패 기관과 전문 기관에 필요한 독립성을 부여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2030 지속가능한 개발 아젠다의 16개 목표와 함께 이와 관련하여 마련된 과거의 기여를 인정하면서, G20 반부패실무협의단은 부패예방과 척결에 책임있는 공공기관과 당국이 운영에 필요한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하여 청렴성을 증진하고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고위급 원칙을 채택하였다.

(비공식 번역본)

범위 및 적용가능성

UN반부패협약 제6조는 자국 국내법제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당사국이 예방적 반부패 정책을 이행·감독 및 조정하고, 부패 예방에 대한 지식 증진 및 전파하는 등 부패를 예방하는 부패방지기구를 두는 것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UNCAC 제36조는 당사국 법률 체계의 근본 원칙에 따라, 법집행을 통해 부패 척결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기관들 또는 개인의 존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마다 UNCAC 제6조와 제36조에 명시된 책임과 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기존 기관과 당국이 이미 있을 수 있다. G20 국가는 국내법 및 반부패 전략과 일치하는 다양한 접근의 채택을 통해 부패예방과 척결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 틀은 G20 국가간 다양할 수 있다. 효율적인 부패예방과 척결을 위하여 이러한 기관과 당국이 필요한 독립성과 국내 프레임워크, 국내 법적 체계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을 부여받고 이러한 기관의 강력한 내부 청렴조치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 고위급 원칙은 국내 프레임워크, 법적 체계 및 법률의 근본원칙과 부합하도록 부패 예방과 척결에 관련된 모든 공공기관과 당국을 포괄한다

원칙 1: 부패예방 및 척결에 책임있는 공공기관 및 당국이 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해 명확하고 적절한 권한과 역량을 갖는 것을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부패예방 및 척결에 관여하는 공공기관과 당국의 권한과 능력은 그 효과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기관의 신뢰도와 대중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20 국가는 이러한 기관과 당국이 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해 명확하고 적절한 권한과 능력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G20 국가는 다음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

1. 부패예방 및 척결에 관여하는 공공기관 및 당국에 헌법적, 법률적 또는 기타 명확하고 집행가능한 권한을 제공하고, 이러한 권한에 관해 필요한 정보에 공공 접근이 가능함을 보장한다

(비공식 번역본)

2. 해당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이러한 기관과 당국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권한, 자원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이러한 기관과 당국이 해당 권한에 따라 그들의 권고나 지시 이행을 이행하거나 감독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질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국내적 틀, 법적 체계 및 법률의 기본 원칙에 따라 그러한 권고나 지시사항의 이행에 관하여 명확하고 투명한 후속조치 감독 메커니즘 또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부패예방과 척결에 책임있는 공공기관과 당국에 그들 기관간 일관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청렴 프레임워크를 두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5. 내부고발자가 권한있는 공공기관이나 당국에 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접근가능한 비밀 신고 채널을 제공하고, 적절한 당국이 평가, 조사 및 효과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레임워크를 보장하는 동시에 정당하지 않은 대우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원칙 2: 부패예방과 척결에 책임있는 공공기관과 당국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성과 자원을 제공한다

국내적 틀과 법적 체계 및 법률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부패 예방과 척결에 책임있는 기관과 당국의 필요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효과적인 기능을 가능케 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필요한 독립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기관과 당국이 부당한 영향력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G20 국가는 국내적 프레임워크, 법적 체계 및 법률의 기본 원칙에 따라 다음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

1. 이러한 기관과 당국의 기관장 자리 임명을 위해, 해당되는 경우, 투명한 성과기반의 선발절차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기관장 임명의 기준은 자격,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비공식 번역본)

2. 해당되는 경우, 이러한 기관과 당국의 기관장 자리의 재임기간 안정성을 보호하며 적절하게 상세하고 심각한 문제와 관련된 해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
3. 해당되는 경우, 정당하고 공정한 공무원 해임절차와 더불어 공개적이고 투명한 성과기반의 채용, 고용, 유지 및 승진 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부패방지 및 척결을 책임지는 기관과 당국에 여성을 포함하여 충분하고 능력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임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4. 이러한 기관과 당국의 효과적인 책임 이행을 방해하는 예산 변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5. 이러한 기관과 당국이 책임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들의 권한에 부합하도록 자체 정책 및 업무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원칙3: 부패예방과 척결에 책임있는 공공기관 및 당국이 기능 수행에 있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필요한 독립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기능 수행의 책임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부패예방과 척결에 책임있는 공공기관 및 당국은 공무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성격의 민원과 신고에 대한 수사 및 질의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국내 틀과 법적 체계 및 법률의 기본 원칙에 따라 독립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그들의 기능에 대한 감독을 보장할 뿐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대한 공명정대, 개방성,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관과 당국은 독립성, 공정성, 효율성 차원에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G20 국가는 다음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

1. 기능의 공정성, 객관성과 일정을 더 잘 확보하기 위하여 민원, 조사, 질의를 처리하는 기관과 당국의 기능 수행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를 수립한다.
2. 국내적 틀, 법적 체계와 법률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러한 기관과 당국이 운영 성과에 대해 적절한 감독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비공식 번역본)

3. 국내적 틀, 법적 시스템 및 법률에 따라, 이러한 기관과 당국의 예산 운영이 감사를 받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4. 운영 및 국내법적 고려 대상이 되는 그러한 기관과 당국의 보고서 및 주요 결정의 공개를 통해 투명성과 개방성을 장려한다.

원칙 4: 부패예방 및 척결에 책임있는 공공기관 및 당국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기타 개인에게 높은 기준의 청렴성을 보장하고 포용성을 촉진한다.

부패방지 및 척결에 책임있는 공공기관과 당국은 최고 수준의 청렴성과 포용성 촉진을 위한 내부 조치와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기관과 당국의 공무원과 직원뿐 아니라 기관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다른 형태의 고용 도는 계약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G20 국가들은 다음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다:

1. 적절한 지침, 내부 신고 메커니즘과 징계 조치가 있는 윤리 또는 행동 강령을 포함하여, 관련 기관과 당국의 공무원에 대한 높은 행동 기준을 설정한다.
2. 이러한 기관과 당국이 일반적인 청렴 리스크와 이해충돌 사례 및 해당 리스크와 이해충돌을 피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선택사항(옵션)에 대해 상세한 조언을 개발할 것을 고려한다.
3. 관련기관의 고위 관리자가 공무 수행에 있어 청렴 제도와 높은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을 보이도록 촉진함으로써, 어떤 형태의 부패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솔선수범하여 고위 관리자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
4. 해당되는 경우, 기타 형태의 고용 또는 계약 관계를 포함하여 이러한 기관과 당국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직원이 업무 수행에 있어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비공식 번역본)

5. 모든 직급의 공무원과 당국이 직장에서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윤리 가치를 개발하도록 충분하고 맞춤형 정보, 소개, 실무 교육, 지침 및 시기적절한 조언을 제공한다.
6. 그러한 기관과 당국내에서, 그리고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기관과 당국의 공무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이러한 표준을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이러한 표준적 의사소통과 청렴기준 확산을 촉진한다.
7. 국내 법률체계의 근본원칙에 부합하여 능동적으로 이해충돌을 식별하고 관리한다; 자산과 이익 신고 기존 시스템 강화, 관련있고 해당되는 경우 로비 활동 청렴성 및 투명성 증진; 선물과 접대에 대한 적절한 정책 수립 또는 강화를 포함하여 부당한 영향에 대한 보호 증진 및 냉각기간과 같은 적절한 위험 기반의 고용 후 제한 조치를 취한다.
8. 이러한 공공기관과 당국 내에 보복으로부터의 효과적 보호를 보장하면서 내부고발자를 위한 안전하고, 접근가능한 비밀의 신고채널을 제공하고, 나아가 보복을 포함한 모든 부당한 대우에 대한 효과적 보호를 보장하면서, 관할당국의 평가, 수사와 효율적 후속조치를 위한 효율적 프레임워크를 보장한다.
9. 부패예방과 척결에 책임있는 공공기관과 당국의 기관장 역할을 포함하여 여성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장려한다.
10. 청렴 기준 위반 시 국내 법률의 기본 원칙에 따라 시의적절하고 비례적인 시정 조치 및/또는 비례적이고 설득력있는 제재를 수립, 적용 및 시행한다.

원칙 5: 부패예방 및 척결에 관여하는 공공기관 및 당국 간 효과적인 협력을 증진한다.

부패예방과 척결에 책임있는 공공기관 및 당국의 효율적 기능은, 국내적 및 G20 회원국 간의 그러한 기관과 당국간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또한 부패 예방과 척결 측면에서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지역사회 기반 조직 등 공공부문 밖의 개인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공식 번역본)

G20 국가는 다음을 통해 이 원칙을 달성할 수 있다:

1. SAI, FIU 와 같은 부패예방과 척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관계 기관과 당국간의 적절한 조화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관련 기관 간 학제 간 학습을 활성화하고 모범사례와 어려움을 선별 및 공유한다. 이러한 협력은 국가 내 훈련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3. 국내 프레임워크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해당 기관 및 당국간 협력과 정보공유 증진을 위해, 이들 구조와 기능에 관한 정보가 외국 관할 당국을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획득가능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해당되는 경우, 부패 예방 및 척결 관련 기관 또는 당국 간 상호 학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관과 당국이 국제 정책 토론, 훈련,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참여를 촉진한다.
5.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지역사회 기반 조직 등 공공부문 밖의 개인과 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해당 기관과 당국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청렴성, 투명성 및 책임성 원칙에 따라 부패 예방과 척결하는 기관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원칙 6: 새로운 또는 부상하는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하기 위하여 부패 예방과 척결에 책임있는 공공기관과 당국의 준비성을 향상한다

부패예방과 척결에 책임있는 공공기관과 당국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형태의 부패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G20 국가는 다음을 통해 이 원칙을 달성할 수 있다:

1. 부패 및 청렴 위험을 평가하고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반복 프로세스를 수립하며, 해당되는 경우, 국내 틀, 법적 시스템 및 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새로운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러한 평가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기적 계획과 전략을 채택 및 이행한다.

(비공식 번역본)

2. 국내 틀의 기본 원칙에 따라, 새롭고 부상하는 어려움에 대한 대처에 있어 향상된 준비성을 갖추기 위한 분석과 역량 강화 증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접근의 사용을 적절히 강화한다
3. 국내 프레임워크와 법적 체계 및 법률의 기본 원칙에 따라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들의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연구와 지식 공유 메커니즘을 부패예방과 척결에 책임있는 기관과 당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4. 부패예방과 척결에 책임있는 공공기관과 당국의 규칙과 규정, 및/또는 지침이 새로운 요구나 시나리오에 따라가기 위해, 필요에 따라, 효과적으로 검토를 받도록 할 것을 보장한다.
